

- 다만, 도시계획상입기획단을 들 수 있도록 한 신설규정은 향후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
-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,
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4. 3. 2.
 보고서 : 박창수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·관리조례(안)

《 검토 보고서 》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04. 2. 13.
-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2. 제정사유

- 국민의 심신단련과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
-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징수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 제정내용은

-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(조례안 제4조)
-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(조례안 제8조)
-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최대한 확보(조례안 제15조)
-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(조례안 제16조)
-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(조례안 제17조)

4. 검토의견

-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·관리조례(안)은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제5조, 제6조, 제9조에 의거 본 조례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
-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
 - 체육시설을 지역주민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와 사용료의 징수 규정을 두었고
 -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이용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였으며
 - 생활체육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운영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규정을 두었으며
 - 또한 필요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본 조례(안)은
 - 그동안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적정한 기준 없이 운영 관리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많은 이바지를 할 것이며
 - 또한 영등포구민체육센터의 개관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제정의 내용과 시기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,

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·관리조례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칠 것입니다.

2004. 3. 2.
보고자 : 박창수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《 검토 보고서 》